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10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김인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변론 종결2020. 7. 22.

판결 선고2020. 9.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4.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12. 2.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 피고 B, F은 2012. 1. 19.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약정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 기숙사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 진행 예정인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서로 신의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G 기숙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금 오천만원을 선투자하며 공사 준공 후 H로부터 이익금 수령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재투자한다(면허 인수비용은 약 일금 일억오천만원 정도 예상한다).

2. 건축공사업 면허를 인수시 원고, F, 피고의 지분은 각각 33%로 하며 향후 서로 협의한다.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G 기숙사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완료 후 일금 일십일억원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일금 삼천만원)은 준공 후 이익금 수령시 병은 갑에게 상환한다

다. 원고는 2011. 9. 28.부터 2012. 5. 23.까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3. 1. 3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원을 지급할 만한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C은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다. 가사 피고 C이 송금받은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정금 50,000,000원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2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건축업을 운영하는 피고 B이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H이 회생신청을 한 2012. 12. 18.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관련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등의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라고 해도 전기공사업과는 별개로 종합건설면허를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고 그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행위를 두고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 B 본인이 상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약정금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4.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윤아